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4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9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17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박종길 의원 외 5명(정순옥, 김정희, 도하석, 장호섭, 이진환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검토기간: 2025. 9. 4.(목) ~ 9. 10.(수)

2. 제안이유

-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, 구청장을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와 행정 간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구성 등(안 제17조)
- 대표회장의 직무 등(안 제18조)
- 협의회의 운영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26조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

○ 비용추계서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5. 9. 3. ~ 9. 15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민·관 거버넌스 기구인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최근 달서구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“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 달서”를 비전으로 하는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」을 수립하였음.
-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·경제·사회 전반의 다양한 계층 참여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제1항에 구성위원 정원을 “30명 이내”에서 “100명 이내”로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7조제2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행정 간 협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회장 1명 운영체제를 공동회장 체제로 전환하여 당연직 공동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.
-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, 교육·홍보 등 지속가능발전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

제26조(이해관계자 협력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,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·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,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, 기술협력 및 표준화, 공동조사·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【현행조례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3조(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(이하 “기본전략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
2.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
3.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4.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
5.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

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·변경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)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·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·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
2.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
3.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4.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
5.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추진상황의 점검)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(이하 “추진상황”이라 한다)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,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조례 제정·개정에 따른 통보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·개정하려는 조례안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·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·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,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

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,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(이하 “지속가능발전지표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개발·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.

제8조(지속가능성 평가)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·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지속가능발전 보고서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
2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
3.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
4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·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

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, 행정교육국장, 복지증진국장, 문화환경국장, 도시창조국장, 보건소장,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2. 경제·사회·환경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
3.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·학계·산업계·교육계·청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

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협의회 설치)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·관 협력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속가능발전 구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
2. 지속가능발전 교육·홍보
3. 지속가능발전 조사·연구
4.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구민실천사업 추진
5.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·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17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달서구의회의원, 기업가,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.

제18조(회장의 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(회의)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20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

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
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